

2026년 전주시 학교 무상급식 로컬푸드 가공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

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가공품 공급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6일

(재)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



1. 공급기간 : 2026. 3. ~ 2027. 2. (1년 간)
2. 공급대상 : 전주시 관내 초·중고·특수학교, 유치원 등
3. 공급품목 : 떡류, 장류, 기름류, 고춧가루, 면류, 기타 가공품 등
4. 공급업체 신청 및 선정

가. 공급업체 신청

- 1) 공고기간 : 2026. 1. 6.(화) ~ 2026. 1. 19.(월) / 14일간
- 2) 신청방법 : 서류제출 (현장접수)
- 3) 접수장소 : 전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
(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 월드컵경기장 남측 1층)
- 4) 문의사항 : 전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 전화) 063-214-8280
- 5) 신청자격

<필수 공통요건>

- 가)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주소를 전주시에 두고, 학교급식 공급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- 나) 원료수급 대장 등을 구비, 주재료의 전주산(없을 시 도내산) 사용 입

증이 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
대 시·군 전주시학교급식 운영위원 현장실사와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

<1개 이상 충족 요건>

가) 「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」을 받은 제품

나) 6차 산업인증을 받은 사업체의 제품

다) 시장군수가 보증하는 기타 우수 인증을 받은 제품

<권장 사항>

가) 일정 수요확보 시 급식용 대용량 제작으로 단가 조정이 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
나) 마을 공동체, 협동조합, 농민가공센터 등 주민참여와 협력이 활성화 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
6) 구비서류

가) 2026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신청서【서식 1】

나) 사업자등록증(전주세무서 발급) 사본

다)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 인증, 6차 산업인증, HACCP 인증 중 해당인증서 사본 (1개 이상 제출 필수)

라) 냉장보관창고를 포함한 건축물 관리대장

(본인 소유 아닌 임대건축물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첨부)

마) 원료수불대장 (주재료 및 기타 포함/ 최근 6개월분)

바) 차량 등록증 사본 (냉장차량 또는 상온제품의 경우 배송전용차량)

사) 종사자 명단(성명, 생년월일, 담당업무 등)【서식 2】

아) 종사자 위생교육필증 사본(또는 계획서)

자) 보건증(대표 및 종사자 전체)

차) 관내산 원재료 수급 계획(없을 시 도내산 원재료수급계획)

카) 단체급식 납품 확인서(공급기관 직인 날인)【서식 3】

타) 생산물 배상책임보험/영업 배상책임보험 사본

※ 구비서류 기재착오·누락 등 미비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는 신청인의 책임이며 구비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편철하여 1부(심사용) 제출

※ **준수사항**

-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
- 제출서류 원본은 현장실사 당일 업체에 비치해 놓아야 함

나. 공급업체 선정

- 1) 선정기관 : 전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
- 2) 선정방법 :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최종 확정
- 3) 심사기준 : 서류심사 30점, 현장실사 70점
(서류 및 현장실사 결과 70점 미만 시, 최종심사 제외)

4) 일 정

가) 서류 접수기간 : 2026. 1. 16.(금) ~ 1. 19.(월) / 2일간

나) 현장실사 기간 : 2026. 1. 30.(금) 예정

다) 접수시간 : 평일 09:00 ~ 17:00까지

라) 공급업체 최종선정 : 2026. 2월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) 선정결과 발표 : 선정업체에 한해 개별연락

5. 기타 공급업체 계약 시 준수사항

가. 식재료 공급

- 1) 각급 학교로부터 검사검수를 받고, 검사검수에 합격한 가공품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.
- 2) 검사·검수에서 불합격한 식재료는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.

나. 공급가격 :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납품단가는 가격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별 공급가격으로 한다.

다. 배상책임 : 공급업체는 식재료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일체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며,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라. 계약의 해지사유

- 1) 공급한 식재료 하자로 인해 학교급식에 3회 이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

- 2) 납품 지시한 식재료를 납품기간 내에 연3회 이상 납품을 하지 못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- 3) 안전성검사 및 원산지 단속결과 부적합(잔류농약 검출 등) 또는 불량판정, 원산지 위반사항이 3회 이상 나온 경우
 - 4) 원산지표시 또는 안전성 검사결과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출한 경우
 - 5)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, 기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마. 계약의 해지사유로 인해 중도 계약 해지된 업체 조치 :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계약 해지된 경우 납품을 즉각 중단 하도록 조치하고, 향후 3년간 공급업체 참여를 제한한다.